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제도 운영팀장 김재기

발포합성수지재질 재활용 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필자의 어린 시절 집에서 TV를 새로 장만한 적이 있었는데 그 포장상자 속에 들어 있는 가볍고 푹신한 하얀 물질을 잘 게 부수어 마치 눈처럼 이리 저리 뿌려 보기도 하며 놀았던 기억이 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TV를 포장했던 그 '가볍고 푹신한 하얀 물질'이 발포합성수지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EPS, Expanded Poly-Styrene)이었다.

발포합성수지는 가벼우면서도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열 보존성이 좋아 전자제품, 농수축산물 등의 원종재, 건설 현장에서의 건축 단열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며 2005년 기준 연간 사용량이 약 20만톤 일 정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합성수지재질과 마찬가지로 발포합성수지도 잘 썩지 않고 매립 처리 시에 높은 환경 부하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자제품 및 농수축산물 완충 포장재에 대하여 재활용의무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재활용을 촉진·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도입 전 21%였던 재활용율이 2005년 들어서는 67.1%로 상승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율의 괄목할만한 양적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그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는 EPS와 EPE, EPP의 재활용실적을 혼용하여 인정하는 데서 오는 문제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EPS와 EPE, EPP를 발포합성수지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재질마다 재활용방법 및 비용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이마다 보니 재활용비용이 비싼 EPE, EPP 대신 EPS로 대체하여 재활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재활용 사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상 그 처리 방법 및 비용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문제는 기존 전자제품 발포합성수지 완충 포장재에서 전기·전자제품 발포합성수지 완충 포장재로 확대하는 취지로 법령을 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용 컴퓨터 본체의 발포합성수지 완충 포장재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점이다. 이는 재활용대상 확대라는 당초의 제도 개선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며, 해당 업계의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세 번째 문제는 발포합성수지 대상 품목을 제한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이다. 발포합성수지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EPS의 경우 건축 단열재로 사용되는 양이 약 70%에 이르러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건축용 자재의 경우 의무이행대상 품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 재활용은 가정용이나 건축용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혼용하여 재활용되고 있으며 이 양자를 현실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실제 재활용되고 있는 건축폐자재용 EPS도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속담에 “한슬밥에 배부르랴”란 속담이 있다. 이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역시 운영상 일부 문제가 있지만 서로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사회 정착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환경
사랑